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산간 등 교통이 불편한 물류취약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증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하도록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19769호, 2023. 10. 24. 공포, 2024. 4. 25. 시행)됨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 증진 노력의 대상인 물류취약지역을 지정·고시하고 고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물류취약지역 지정 고시안

제1조(물류취약지역)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조의2에
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이란 다음 지역을 말한다.

구분	물류취약지역(52개 시·군·구)
부산(1)	강서구(가덕도동)
인천(4)	중구(용유동), 서구(신현원창동), 강화군(교동면, 삼산면, 서도면), 옹진군(북도면, 연평면, 백령면, 대청면, 덕적면, 자월면, 영흥면)
경기(3)	안산시(대부동), 화성시(우정읍, 서신면), 가평군(가평읍, 설악면, 청평면, 상면, 북면, 조종면)
강원(13)	춘천시(동산면, 북산면), 원주시(귀래면), 삼척시(가곡면), 홍천군(화촌면, 두촌면, 내촌면, 서석면, 남면, 서면, 북방면, 내면, 영귀미면), 횡성군(안흥면, 둔내면, 공근면, 서원면), 영월군(상동읍, 북면, 남면, 주천면, 김삿갓면, 한반도면, 무릉도원면, 산솔면), 평창군(미탄면, 방림면, 대화면, 봉평면, 용평면, 진부면, 대관령면), 정선군(남면, 북평면, 임계면, 화암면, 여량면), 철원군(철원읍, 근북면, 근동면, 원동면, 원남면, 임남면, 서면, 근남면), 화천군(하남면, 상서면, 사내면), 양구군(동면, 방산면, 해안면, 국토정중앙면), 인제군(남면, 북면, 기린면, 서화면, 상남면), 고성군(현내면, 죽왕면, 토성면)
충북(1)	영동군(용화면)
충남(6)	보령시(웅천읍, 오천면, 주산면, 미산면), 서산시(팔봉면, 지곡면), 당진시(석문면), 서천군(장항읍), 홍성군(서부면), 태안군(안면읍, 근흥면)
전북(4)	군산시(옥도면), 완주군(상관면), 고창군(심원면, 부안면), 부안군(변산면, 위도면)
전남(10)	목포시(유달동), 여수시(돌산읍, 율촌면, 화양면, 남면, 화정면, 삼산면, 월호동), 고흥군(도양읍, 금산면, 도화면, 포두면, 봉래면, 영남면, 과역면), 보성군(별교읍, 문덕면), 해남군(화산면, 송지면, 화원면), 무안군(망운면), 영광군(낙월면), 완도군(금일읍, 노화읍, 군외면, 신지면, 고금면, 청산면, 소안면, 금당면, 보길면, 생일면), 진도군(진도읍, 고군면, 의신면, 임회면, 지산면, 조도면), 신안군(지도읍, 압해읍, 증도면, 임자면, 자은면, 비금면, 도초면, 흑산면, 하의면, 신의면, 장산면, 안좌면, 팔금면, 암태면)
경북(3)	영덕군(창수면), 봉화군(석포면, 재산면, 명호면), 울릉군(울릉읍, 서면, 북면)
경남(5)	통영시(산양읍, 용남면, 도산면, 광도면, 옥지면, 한산면, 사랑면), 사천시(동서동), 양산시(원동면), 남해군(상주면, 미조면), 하동군(금남면, 진교면)

제주(2)	제주시(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추자면, 우도면, 일도1동, 일도2동, 이도1동, 이도2동, 삼도1동, 삼도2동, 용담1동, 용담2동, 건입동, 화북동, 삼양동, 봉개동, 아라동, 오라동, 연동, 노형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서귀포시(대정읍, 남원읍, 성산읍, 안덕면, 표선면, 송산동, 정방동, 중앙동, 천지동, 효돈동, 영천동, 동홍동, 서홍동, 대륜동, 대천동, 중문동, 예래동)
-------	---

제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